

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8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11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12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도로법의 개정예 의거 과오납된 점용료등의 반환 및 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 등을 보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함. (안 제6조의3)
- 나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때 점용료 전액 감면사항 신설 (안 제8조제3항)
- 다.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, 발신용 휴대전화기지국 등을 추가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토록 함.
(안 별표 1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1989. 11. 6 조례 제1152호로 제정되어 그간 2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예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반환 및 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 등을 보완코자 함은 타당한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하천 점·사용료나 도로점·사용료는 목적이유사한 세입이나 반환시 하천 점·사용료는 이자 없이 반환하고 도로 점·사용료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
- 답 : 도로 점·사용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하천사용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 없이 소관 부서가 다르므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질의하여 바로 잡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